Yeosu
Web Contents

2024년 10월 12일 16시 59분

목차

목차 2
자동차등록 3
수수료 3
관련법규 3
구비서류 3
유의사항 3
과태료 4

수수료

증지대 1,000원, 등록면허세 15,000원

관련법규

자동차관리법 제13조, 자동차등록령 제31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~제41조

구비서류

구 분		구비서류
공통서류		·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· 자동차등록증 · 본인 신분증(오신분 신분증) ※ 위임 시 - 위임받는자 신분증, 위임장(위임자의 도장날인),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※ 법인 차량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인감증명서, 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, 위임장(법인인감날인) ※ 영업용 차량의 경우 대폐차 공문
추가 서류	폐차	· 폐차인수증명서(원본) - 폐차사업자 발행
	수출	· 수출예정사실증명서 · 자동차번호판(2개) ·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대표자 신분증 ※ (수출업체가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 ·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· 대리인 방문시 자동차소유자 또는 수출업체의 위임장(도장날인) 필요
	도난	· 도난신고확인서(경찰서 발행)

유의사항

-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.

과태료

- 폐차 후 1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
  (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0,000원 부과,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,000원 부과)
-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 수출이행신고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
  (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0,000원 부과.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,000원 부과)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
Web Contents

여수시